

# OSB저축은행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 상품설명서
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**참고자료**이며, **실제 계약은 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,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**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## 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「퇴직연금 정기예금」
-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예금 상품

## 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**됩니다.

구분		내용	
가입대상		▷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<b>자산관리업무 수행 금융회사(퇴직연금사업자)</b>	
가입금액		▷ <b>최저 : 1원 이상</b> ▷ <b>최대 : DB형 - 제한없음, DC형 및 IRP형 - 5천만원까지</b>	
계약기간		▷ 1년	
예금자 보호여부	DC / IRP	<b>해당</b> 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한도는 다른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최고 5천만원"입니다. 단, 2개 이상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. ※ 예금자보호 금융상품 중 퇴직연금 별도
	DB	<b>비해당</b>	확정급여(DB)형 제도의 경우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적용이율 등 (세금납부 전)		▷ 기본이자율은 신규가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이자율이 적용됨 ※ 신규(자동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)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	
이자계산방법		▷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(원미만 절사)  신규일 ————— 만기일	
이자지급방법		▷ 만기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 지급	
만기재예치		▷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의 만기 시 해당 만기일에 <b>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</b> ▷ 자동 재예치시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▷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재예치 처리	
만기 후 이율		▷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	

<b>예금 해지 시 불이익</b>	<p>▷ 만기 전 예금해지 시 <b>중도해지이자율 적용</b></p>								
<b>일반중도해지 이자율</b>	<p>▷ 신규/재예치일 당시 고시한 퇴직연금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예시) ※ 기본산식 : 신규(또는 재예치)시점 약정금리 × (차등률) × (보유기간/계약기간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9 369 1125 504"> <thead> <tr> <th>보유기간</th> <th>1개월이상~ 3개월미만</th> <th>3개월이상~ 12개월미만</th> <th>12개월 이상~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차등률</td> <td>50%</td> <td>60%</td> <td>7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단, 1개월미만은 연0.2%적용</p>	보유기간	1개월이상~ 3개월미만	3개월이상~ 12개월미만	12개월 이상~	차등률	50%	60%	70%
보유기간	1개월이상~ 3개월미만	3개월이상~ 12개월미만	12개월 이상~						
차등률	50%	60%	70%						
<b>특별중도해지 사유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</li> <li>2.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,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,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</li> <li>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 <li>5. 수탁자의 사임</li> <li>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/li> <li>7.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</li> <li>8.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</li> <li>9. 수수료의 징수</li> </ol>								
<b>특별중도해지 이자율</b>	<p>▷ 신규일(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)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.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예치기간 6개월미만 :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2.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: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3.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: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4.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: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li>5.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: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</li> </ol> <p>※ 단,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</p>								
<b>분할 지급 (일부 지급)</b>	<p>▷ 이 예금은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하며, 자동 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단,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li>2.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</li> </ol>								
<b>계약의 해지</b>	<p>▷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</p>								
<b>제한사항</b>	<p>▷ <b>계좌에 압류,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</b></p> <p>▷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<b>질권 설정,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 불가</b></p>								

### 3 |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,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
- 이 예금은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- 이 예금은 추가 입금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,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.
-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, OSB저축은행 고객센터(1644-0052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[www.osb.co.kr](http://www.osb.co.kr))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.